



천주교 서울대교구
구로3동 성당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미사시간	주일	토요일 주일 : 19:00	
		06:30 (새벽)	10:30 (교중)
		12:00 (중·고등부)	15:00 (유·초등부)
	18:00 (청년)	21:00 (밤)	
평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	
예비자 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	
유아세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	
연령회 회장	김인기 베드로 010-5311-7604/869-5965		

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울뜨레아	5월 17일(일) 11:40	강당
사목회의	5월 21일(목) 19:40	피정방

알림

- 오늘(5월 17일)은 홍보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.
- 5월 20일(수) 11시 강당에서 경로당 월례미사 있습니다.
- 5월 29일(금)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.

국수잔치 안내

- 5월 17일(오늘) 국수잔치는 9구역에서 담당합니다.
- 국수잔치 봉사 :
울뜨레아 2인, 레지오 2인, 사목회 2인

다음 주일(5/24) 청소 담당 : 11구역

시니어 아카데미(노인대학) 봄소풍

- 일시 : 5월 21일 (목) 오전 9시
- 출발 : 대성전 앞
- 장소 : 월미도

예비자 교리반 신청 안내

- 첫모임 : 5월 31일(일) 오전 9시
- 장소 : 제 2교실
-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.
- ※ 세례식은 2026년 성탄 대축일 예정입니다.

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

- 지향 :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
-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.

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

- 묵주기도 : 매일 미사 40분전 시작

2026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

- 일시 : 5월 25일 (월) 17시 ~ 19시 대성전
- 대상 : 전 신자
- ※ 성전 입구 전시회 관람, 음료, 간식나눔이 있습니다.

성모님에 관한 작품 공모

- 대상 : 전 신자
- 작품내용 : 그림, 시, 수필, 편지 등
- 제출기한 : 5월 24일(일)
- 기재사항 : 구역/반/이름
- 접수 : 본당 사무실
- 작품 제출해주신 모든 분께 소정의 상품 증정 -

우리들의 정성(5월 6일 ~ 5월 12일)

교무금		9,165,000원
주일헌금	현금	 4,910,000원
	신자애포	 227,000원
감사헌금	서만심11만원 우상희 5만원 민경애50만원	
	라운화10만원 김창현10만원 구상호10만원	
	황금옥10만원 강복희 5만원 심명숙10만원	
	신영숙10만원 김정자 5만원 김안나 2만원	
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 일	해설	복사	독서
5/17	황원선	장희석 임종윤	이치헌 정재경
5/24	임종남	신종구 이남식	정재호 이화정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 일	토요주일	06:30	10:30
5/17	하재민	옥윤필	김용진 최웅조
5/24	김영균	조흥환	도현만 하재민

성가번호 ♪ 입당 : 137 ♪ 예물준비 : 217, 220 ♪ 영성체 : 152, 153 ♪ 파견 : 141



환호소리 가-운데 하느님이오르신 다 나팔소리 가-운데 주님이오르신-다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3 편 사 목

제 2 장 본당 사목구

제 1 절 본당 사목구

제 2 관 사목자의 임무

제 161 조 (사목자의 임무)

1항 사목구 주임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 봉헌과 강론을 할 의무가 있다(교회법 제528조 1항.제534조;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, 34-36항 참조).

2항 사목자는 성사를 합당하게 청하는 신자에게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(교회법 제843.980조 참조).

제 162 조 (주임과 보좌)

1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보좌신부에게 형제애로 대해주며, 그들의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직무 수행을 격려와 충고로써 지도한다(교회법 제545-547조; 사제직무교령, 8항 참조).

2항 보좌신부는 본당 사목구 주임을 고유한 목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보필하며 구상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목활동도 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548조 참조).

제 163 조 (관 리)

1항 (직 원)

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는 직원들은 교구의 규정에 따라 주임사제가 임면한다(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62-64항 참조).

2항 (건 축)

본당 사목구 내의 건물의 신축, 개축, 증축 등은 교구 지침에 따른다(사목회의 전례 의안, 217-231항 참조).

3항 (재 정)

본당 사목구의 재정 관리는 교구 지침에 따른다(교회법 제532조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65.66항 참조).

제 164 조 (문 서)

1항 본당 사목구에는 세례대장, 견진대장, 혼인대장 및 문서, 사망대장, 교적, 금전출납부, 비품대장과 교구규정철이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(교회법 제535조 1항 참조).

2항 교적에는 신자들의 가족관계 및 세례대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신분 변동 사항(서품, 수도 종신서원, 입양, 혼인관계, 사망)이 기재되어야 한다(교회법 제535조 2항 참조).